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 정 문

사건번호: KR-1500133

신 청 인: 주식회사 아모레 퍼시픽(Amorepacific Corporation)

대리인 변호사 김영철, 정종국, 전용석(법무법인 KCL)

피신청인: 윤지원(Ji-Won Yun)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Amorepacific Corporation)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수표동)

대리인: 변호사 김영철, 정종국, 전용석(법무법인 KCL)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58 석탄회관빌딩 10층

피신청인: 윤지원(Ji Won Yun)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1동

분쟁 도메인이름은 "misenscene.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Godaddy.com, LLC(14455 N Hayden Rd Ste 226, Scottsdale, AZ 85260)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5. 8. 25.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5. 8. 31.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5. 9. 1.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5. 9. 1.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5. 9. 3.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 기일이 2015. 9. 23.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해당 절차개시 통지를 하면서 해당 조정신청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등록약관상의 언어(영어)로 진행되어야 하나, 신청인 측에서 약관과 다른 언어(한국어)로

진행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에 이를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5. 9. 23. 피신청인은 그 어떤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2015. 10. 2.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이덕재 위원을 조정인으로 선임요청 하였고, 같은 날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5. 10. 5.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Mise-en-scène** **미장센** 을 제3류 “미용비누, 샴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99. 9. 1.자에 출원, 2000. 7. 31.자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상표 1”),

mise en scène 을 제16류 “여송연용 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6. 6. 26.자에 출원, 2007. 5. 11.자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상표 2”)

피신청인은 2005. 11. 7.자에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웹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은 (i) 분쟁도메인이름이 이 사건 상표들의 표장과 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B. 피신청인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분쟁도메인이름은 이 건 상표들의 핵심요부 “mise en scene”과 비교할 때 영문자 “e” 하나만 있고 없는 차이밖에 없어 동일한 출처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2005. 11. 7. 등록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웹페이지에는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한다는 의사표시 및 제3자가 실제로 구매하기 위하여 접촉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이 이 건 상표들을 표시한 ‘미장센(Miseenscene)’ 샴푸 등을 출시하여 2000년부터 2014년 까지 누적매출액은 11,985억원, 누적 광고비지출액은 561억 9,100만원에 이르고, ‘네이버 지식쇼핑’에서 ‘미장센’ 및 ‘miseenscene’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62,560개의 항목이 검색될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상표들은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이 건 상표 1을 등록하고 제품을 출시한 지 약 5년이 지난 후에 피신청인이 이와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고자 할 뿐 정상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US\$52,000(한화 약 62,400,000원)에 판매하고자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D. 절차진행 언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은 주소지가 '대한민국 대구 달서구 월성1동'이고, 전화번호도 대한민국의 전화번호이며, 이름도 윤지원으로 추정되며, 한글로 보낸 도메인이름 양도요청 이메일에 대하여 "외국에서만 메일이 오다가 국내에서 오니 반갑네요"라고 기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적어도 한국어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청인이 이 사건을 한국어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센터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을 한국어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과 한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이 법적 분쟁에 관하여

영어로 작성된 서면을 능숙하게 이해하고 영어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을 한국어로 진행하는 것이 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에게도 유리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한국어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misenscene.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1인 조정인

이덕재

결정일: 2015년 10월 29일